

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. 9. 20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2인으로 하면서 그 중 1명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
- 관련조례와 상충되는 조문과 조례안중 일부 불확실한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현(안제4조제2호)
 -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 →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
 - 부위원장 1인(기획관리실장)을 2인으로 하고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함(안제10조제2항 신설)
 -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.(안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 신설)
 -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와 상충되는 조문 수정
 -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→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
- *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(수당) ①……………다만,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중 "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"를 '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"로 한다.

안 제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
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안 제6조중 "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, 충청북도홈페이지 등
에"를 "보조금 지원계획을 충청북도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"로 한다.

안 제7조중 "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"을 삭제한다.

안 제8조중 "검토 조정한 후"를 "검토한 후"로 한다.

안 제9조중 "지원 여부 및"을 삭제한다.

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
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
안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이
되고,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안 제10조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,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.

안 제10조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, 제4항은 제5항으로 한다.

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안 제16조중 "공무원이 아닌"을 삭제한다.

안 제17조제2항중 "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"을 "사회단체 보
조금 지원 중단 또는 축소 등 운영에"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9조(결과통보)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,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9조(결과통보)(삭제).....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되,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.	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되,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 —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,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② (생략) 1. (생략) 2. 위촉직 위원 : 도의회의원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과 덕망을 갖춘 자 — —	③ (제정안과 같음) 1. (제정안과 같음) 2. 단,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.
③ (생략)	④ (제정안과 같음)
④ (생략)	⑤ (제정안과 같음)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2조(회의 운영)</p> <p><u>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·의 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</u></p>	<p>제12조(회의 운영)</p> <p><u>(삭 제)</u></p> <p>—</p> <p>—</p>
<p>제16조(실비보상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에 참석한 <u>공무원이 아닌</u> 위원에 대 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성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실비보상)</p> <p><u>(삭제)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17조(보고 등) ②도지사는 매년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 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 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보고 등) ②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<u>...지원중단 또는 축소 등 운영에</u>.....</p> <p>.....</p>